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운영됨에 따라, 그간 운영방안에 대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 법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과제별 자문단 구성·운영 근거 신설(안 제9조)

중앙·지방간 조정이 어렵거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중앙·지방이 함께 과제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과제 구체화 및 쟁점 조율 추진

나. 수당 등 지급 대상 보완·확대(안 제11조)

‘실무협의회’ 참석자 및 ‘과제별 자문단’ 참여자까지로 수당·여비 등 지급 대상 확대

※ 현재 시행령에 수당 등 지급 대상자로 ‘협력회의’ 참석자만을 규정

다. 지방지원단 설치·운영 근거 신설 등(안 제12조)

1)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을 ‘중앙지원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지방 4대 협의체에 ‘지방지원단’을 설치·운영

2) ‘중앙지원단’은 회의를 운영하고 중앙안건을 전담 발굴·조정하며, ‘지방지원단’은 지방안건을 전담 발굴·조정하는 역할 분담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도보고 근거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관련부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실무협의회는 안건 중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내용의 구체화 및 관계 기관 간 의견 조정 등을 위해 과제별 자문단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 본문 중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협력회의에 참석하게 하는”을 “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등에 참석하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를 “업무의 효율적 지원 및 중앙 안건 조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중앙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을 두며, 지방 안건 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의 전국적 협의체에 중앙지방협력회의지방지원단(이하 “지방지원단”이라 한다)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중앙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지방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전국적 협의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안전 조정) ① ~ ② (생략)	제9조(안전 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③ 실무협의회는 안전 중에서 중·</u> <u>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u> <u>는 과제 내용의 구체화 및 관계 기</u> <u>관 간 의견 조정 등을 위해 과제별</u> <u>자문단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u>
제11조(수당 등) <u>법 제3조제7항에 따</u> <u>라 협력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사람</u> <u>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u> <u>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u> <u>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u> <u>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u> <u>다.</u>	제11조(수당 등) <u>협력회의, 실무협의</u> <u>회 등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u> <u>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u> <u>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u> <u>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u> <u>우에는 그렇지 않다.</u>
제12조(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 ① <u>협력회의의 운영과 실무협의회의</u> <u>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u> <u>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지방협력회</u> <u>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u> <u>을 둔다.</u>	제12조(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 ① <u>협력회의의 운영과 실무협의회 업</u> <u>무의 효율적 지원 및 중앙 안전 조</u> <u>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지</u> <u>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이하 “중앙</u> <u>지원단”이라 한다)을 두며, 지방 안</u> <u>전 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u> <u>제182조제1항제1호의 전국적 협의</u> <u>체에 중앙지방협력회의지방지원단</u> <u>(이하 “지방지원단”이라 한다)을</u>

② 지원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단장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지원단의 부단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협력회의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협력회의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신 설>

둔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중앙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신 설>

이 정한다.

③ 지방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전국적 협의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자치행정과	
연 락 처	(044) 205 - 3121